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속권 상실신고 제도 도입 〉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4호)

2024.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화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현행 상속제도 개요 및 개정안의 발의 배경	5
3. 제21대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8
4.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11
5. 개정안에 대한 검토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41명
2. 제 안 일 : 2024. 5. 31.
3.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전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상속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상속권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합의안(<구하라법>)이 마련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04조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피상속인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현행	개정안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 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제1항 각 호의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등이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2. 현행 상속제도 개요 및 개정안의 발의 배경

현재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사망 후 재산 분배에 관한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①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법정상속제도”에 따라 상속인을 결정한 후(상속인 확정), ② 상속인의 성별·피상속인과의 관계·혼인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균분하는 “균분상속제도”를 따르되 보충적으로 배우자 가산, 기여분 제도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배분하고 있음(상속재산 분배).

첫째, 상속인 확정의 경우, 현행 「민법」 제1000조¹⁾와 제1003조²⁾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①직계비속 및 배우자(1순위), ②직계존속 및 배우자(2순위), ③형제자매(3순위), ④삼촌·고모·외삼촌·이모·사촌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4순위) 순으로 상속순위가 결정되고, 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됨. 다만, 「민법」 제1004조³⁾의 상속결격사유

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3)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가 있는 상속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동순위 상속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의 친족이 상속을 받게 됨.

[현행 민법상 법정상속순위]

우선순위	피상속인(사망자)와의 관계	상속인 해당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비교: <u>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친족은 상속인에서 제외됨</u>		

둘째, 상속재산 분배의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을 균분(均分)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민법」 제1009조제1항), ①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50% 가산된 상속분을 지급하고(「민법」 제1009조제2항)⁴⁾, ②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가산함(「민법」 제1008조의2)⁵⁾.

- 4)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5)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한편, 현행 「민법」의 상속결격은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도록 하는 것으로, 제 1004조에서는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피상속인·직계존속·배우자 등의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이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에 대한 유기·방임·학대 등을 행한 친족에 대해 상속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라도 피상속인인 자녀가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받게 되고, 자녀가 사망전 생전증여나 유언을 통해 자신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재산상속을 하지 않으려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해당 부모는 ‘유류분 반환 청구⁶⁾’를 통하여 일정부분 상속재산을 획득할 수 있게 됨.

가출·이혼 등으로 피상속인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

6)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증여) 또는 유언(유증)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의미함(지원림, 『민법강의』, 2024, p. 1685).

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제18대 국회에서부터 제21대 국회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제한 사유에 포함시키려는 입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온 상황으로, 동 개정안 역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임.

3. 제21대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제21대 국회에서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개정안 총 12건이 발의·제출되었음.

[21대 국회에서 발의·제출된 관련 개정안]

방식	개정안 (의안번호)	결격사유 또는 상속권 상실 사유	세부 절차
상속인의 결격사유 추가	서영교의원안 (2100070)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	◦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효력 상실 ◦ 누구든지 언제든지 상속이 무효임을 주장 가능
	이태규의원안 (2109874)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로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자 ◦ 친권 상실 선고를 받아 실권이 회복되 지 않은 자	
	윤재갑의원안 (2122638)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인 피상속인을 유 기·학대 한 자	
	민홍철의원안 (2105118)	◦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상해나 폭행 의 죄로 징역 1년 이 상의 형을 받은 자	

방식	개정안 (의안번호)	결격사유 또는 상속권 상실 사유	세부 절차
	이명수의원안 (2107619)	◦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 ◦ 피상속인,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 학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	
상속권 상실선고 도입	양정숙의원안 (2113279)	◦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 제913조에 따른 보호·교양의무 이행을 해태한 경우	◦ 법정상속인 등 청구권자가 청구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
	박재호의원안 (2103257)	◦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 피상속인,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신영대의원안 (2101386)	◦ 피상속인,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학대, 유기,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 피상속인에 대한 친족 사이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 고의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피상속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때	
	정부안 (2110864)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녀, 부부, 직계혈족 등)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 피상속인,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정점식의원안 (2122898)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결격의 확인	서영교의원안 (2108076)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	◦ 법정상속인 등 청구권자가 1년내 가정법원에 상속결격의 확인을 청구

이와 같이 발의·제출된 법률안의 내용은 크게 ①현행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해태 등을 추가하여 상속권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식과 ②개정안과 같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상속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분됨.

이러한 법률안을 대상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총 3차례(2023년 8월 31일, 11월 15일, 2024년 5월 7일) 심사하여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음.

참고로 동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대안과 시행일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⁷⁾을 통해 유류분 규정과 관련하여 단순위헌,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제4호⁸⁾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하였음.

둘째,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제3호⁹⁾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셋째,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¹⁰⁾

7) 2020헌가4 등, 2024. 4. 25.

8)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9)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0)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민법」 제1118조¹¹⁾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개정안의 내용인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유류분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¹²⁾이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1)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12) [220016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7인)

[22004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5.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개정안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모습

지난 제21대 국회 법안 심사 경과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상속권 제한의 방식으로 개정안은 재판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를 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을 상속권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양의무 위반”, “심히 부당한 대우” 등과 같은 사유는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¹³⁾.

둘째, 청구권자와 관련하여 ①개정안 제1004조의2제1항은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¹⁴⁾하도록 하면서¹⁵⁾ ②제3항 및 제4항에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후순위 상속

13) 예컨대, 상속결격 사유로 “부양의무 위반”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달성하는 측면에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누구나 기한의 제한 없이” 상속인의 상속결격을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상속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관계의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음.

14)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권 상실 청구권자가 되며, 만약 피상속인에 의해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됨(민법 제1095조). 다만, 개정안 제1004조의2제2항에서는 상속권 상실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5)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정부안에서는 피상속인이 생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상속개시 전 구체적인 권리로서 발생하지도 않은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 등이 제기된 바 있음(김상용·박인환, 「상속권상실선고에 관한 법무부 개정안의 문제점」, 2021. 3.)

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개정안이 상속권 상실 청구권자를 공동상속인으로 한정 한 취지는 청구권자의 제한이 없을 경우 불필요한 상속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1004조의2제3항은 **공동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기한**을 상속권 상실사유가 있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상속관계가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속권 상실사유가 있는 직계존속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그 청구를 가능하게 하였음.

셋째, **상속권 상실 대상**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만을 상실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제 현실에서 문제되는 사안 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임.

넷째, **상속권 상실사유**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1004조의2제1항 및 제3항은 피상속인은 ①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상속결격사유 외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③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공동상속인은 ①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상속결격사유 외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③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

도록 규정하여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들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다섯째, 상속권 상실에 대한 판단 및 그 효력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1004조의2제5항은 가정법원이 청구의 원인이 된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항은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한편 그 이전에 상속인과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¹⁶⁾.

다만, 이와 관련하여 안 제100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상속권 상실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여섯째,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의 성격과 관련하여 개정안 부칙 제3조는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을 “나류 가사소송 사건”으로 규정하여 ①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직권탐지주의)¹⁷⁾, ②재판 이전에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조정전치주의)¹⁸⁾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상속 분

16) 다만, 개정안 제1004조의2제6항과 관련하여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은 상속개시 후에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상속개시 후에”를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17) 「가사소송법」 제17조(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18)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

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일차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일곱째, 기타 사항으로 개정안 제1004조의2제2항은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된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그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하려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04조의2제7항 및 제8항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전까지 상속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에 관해 규정하고, 부칙 제3조를 통해 상속재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을 상대방이 없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개정안의 시행일 및 적용례 관련

첫째,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해 제21대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대안의 경우 그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에 관한 규정이 그 이전에 정비될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에 대한 시행 시기도 앞당기기로 한 바 있음¹⁹⁾.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정안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와 유류분 상

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21대 414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2024. 5. 7.)

실사유 정비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그러므로 개정안과 같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이를 조속히 시행할 것인지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정비를 함께 시행할 것인지²⁰⁾를 법안 심사 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안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등이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인이 부양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상속권 상실 사유를 안 제1004조의2제1항과 제3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61

20) 제21대 국회에서와 같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먼저 입법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하고, 유류분 상실사유를 개정시한 내 정비하여 그 시행시기를 일치하는 방안과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과 유류분 상실사유 정비를 함께 논의하여 이를 의결하는 방안이 있겠음.